

ANSI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 및 기준

ANSI Policy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in Voluntary Standards Area

김영태(Y.T. Kim)
박기식(K.S. Park)

표준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표준기반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I. 개요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에서 제품의 시험 및 인증 프로그램 및 품질 인증제도의 인정 및 등록과 같은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CA) 관련 업무는 자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자체 평가를 기초로 하여, 시험기관, 인증기관,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등록기관 등을 정부의 개입 없이 제3자 기관(Third Party)이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 2].

미국의 ANSI가 운영하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인정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들을 주요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3, 4].

첫째, 미국내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관심사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정책 포럼을 제공하고;

둘째, 적합성 평가 업무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지역 및 국제기구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적합성 평가 메커니즘 제공과 이에 대한 전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셋째,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 메커니즘 개발에 대한 적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및 배포하고;

넷째, 민간부문에게 국가 인정 메커니즘에 기초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예: 제품 인증, 품질 인증제도 등록, 시험기관의 평가 등)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이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시장 유통 시 보다 자유롭게 제품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Certification)¹⁾ 프로그램 및 품질 인증제도의 인정(Accreditation)²⁾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간 동등한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각종 인증 프로그램의 국가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간의 상호인정은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품의 인증 프로그램이 자유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쌍방간에 기술적 장벽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의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미국의 ANSI 등과 같은 기관에서 규정하는 인정 기준에 의해 인정된다면 미국과의 교역은 아무런 장벽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ANSI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인정 활동은 산하 인정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³⁾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 1) 문서 또는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가나 공인기관이 인정하여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함.
- 2) 자격이 있는 기관(주관청, 국제기구 등)이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 인증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행위나 권한을 말함.
- 3)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인증 프로그램 개발 지원, 프로그램 평가 절차 검토, 인정 권고 및 인정된 인증 프로그램을 감사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실질적인 미국 인증기관들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이 위원회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ANSI의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하며,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는 ISO/IEC 등에서 규정하는 국제표준 및 지침서에 부합하는 인정 기준들에 의해 평가된다. ANSI는 1997년말 현재, 이러한 인정 기준들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제품 및 부속장치, 음식 서비스장치, 음료수 처리장치 등 13개 분야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인정해오고 있다[1].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에서 미국의 ANSI가 규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 및 세부 인정 기준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관련 정책의 수립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ANSI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 및 기준

1. 인정 정책

ANSI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은 각종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며, 인증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감시 등에 소요되는 자원의 지출을 줄이거나 없앴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규제 활동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ANSI의 이러한 인정 정책은 역량 있는 인증 프로그램의 국제적 인정(예: 상호인정)을 통해 세계와의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ANSI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

증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제반적인 사항을 크게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5].

- 가) 인증 프로그램은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성격을 갖는 인증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나) ANSI와의 일정한 계약하에서 면허를 가진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
- 다) 인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ANSI Z34.1(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에서 규정하는 각종 요구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라) 해당 인증 프로그램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을 보유해야 함.
- 마) 인증기관은 ANSI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활동에 대해 관련 소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바) 최초 인정을 연속적으로 승인(Continuing Compliance)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사) 인증기관은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익을 대차대조표 양식으로 ANSI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아) 인증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공공의 관심사와 가치를 제공해야 함.

2. 인정 기준

ANSI의 인증 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인증 프로그램은 ANSI Z3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인증 프

로그램의 요구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기준들을 만족해야 한다[5, 6].

가. 표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위해 적용되는 표준은 ANSI의 관련 표준을 원칙으로 하나, ANSI 이외의 표준은 ANSI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나. 인증 프로그램 평가 관련 문서

ANSI에 의한 인증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관련 문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i)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당사자간 (ANSI와 인증기관)의 법적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모든 필수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계약서 관련 문서
- ii) 인증 프로그램 절차 안내 관련 문서(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목록 발행,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요구조건, 효력에 관한 사항,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 기록 및 보고사항, 인증 마크의 관리, 프로그램 변경시의 재 자격부여 방안 등)
- iii) 인증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목록과 관련된 문서(예를 들어, 사용된 표준의 정의, 인증기관과 제조업자(또는 판매자)와의 관계, 인증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들이 해당 표준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서 등)

다. 인정절차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신청자)은 1차적으로 약식 형태의

인정 신청서(신청 수수료 \$70 포함)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ANSI(적합성평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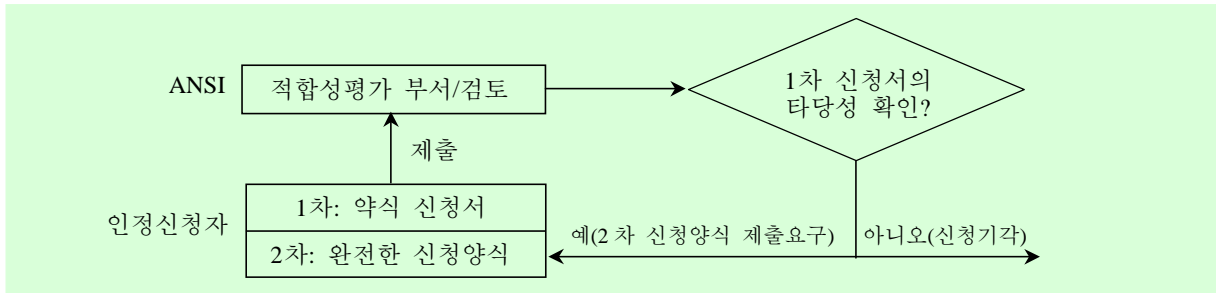
- i) 인증기관이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제3자 기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확인서
- ii)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인증마크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세부적으로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인증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고, 신청서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어 아직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복사본 제시
- iii) 프로그램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큐먼트(예: 브로셔, 광고 문안 등) 사본
- iv) 인증기관에 대해 공인의 검사기관이 사전에 검사한 경우, 검사기관에서 활용한 표준 목록을 포함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
- v)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가치 증명서. 여기에는 인정 신청을 한 인증 프로그램이 대중 이익에 어떻게 공헌하는지와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왜 이용자들이 가치를 부여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

이와 같이 ANSI는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신청서류들을 접수하면, ANSI는 그것들이 인증 프로그램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관련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아울러 1차적인 약속 신청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적으로 완전한 ANSI의 인정 신청 양식(CA-4)⁴⁾에 의거(신청 수수료 \$2,000 포함)하여 다음의 15가지 정도의 세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7].

- i) 인증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고 있는 브로셔, 광고 문안, 팸플렛 등과 같은 견본
- ii) 적용된 표준의 복사본
- iii) 관련된 규정 및 법규의 복사본을 포함한 인증기관의 활동 설명서
- iv) 인증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의 성명 및 이력 등에 대한 목록 및 조직도
- v) 인증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모든 면허 보유자와의 관계 설명
- vi) 인증기관과 면허보유자간의 계약에 대한 견본
- vii)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당사자간에 야기될 수 있는 이해관계 설명
- viii) 검사기관이 인증기관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검사기관의 정체성과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간의 계약적 관계에 대한 견본
- ix)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및 절차 관련 도큐먼트
- x) 프로그램 운영 절차 안내서
- xi) 관련 제조업자 등의 주소를 포함한 인증된 제품 목록
- xii) 인증된 제품에 사용된 마크의 견본
- xiii) 피측정 대상에 대한 표본 추출 방법, 검사 수준 및 합격 기준을 포함하는 평가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항

4) 여기에는 신청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프로그램명, 신청자명 등), 행정기관 정보, 후원기관 정보, 시험기관 정보(장비 및 설비 등), 인증기록, 제조업자에 의한 유지관리 기록 등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세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림 1)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 신청절차

xiv) 평가 절차에 사용된 시험설비, 시험기관 등에 대한 목록 및 이들의 기능적 설명서
 xv) 기타 ANSI가 신청된 인증 프로그램을 인정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
 이러한 일련의 인정 신청서류를 ANSI가 접수하면 ANSI의 인정 위원회에서 인정 기준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인증기관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ANSI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절차를 도시적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 인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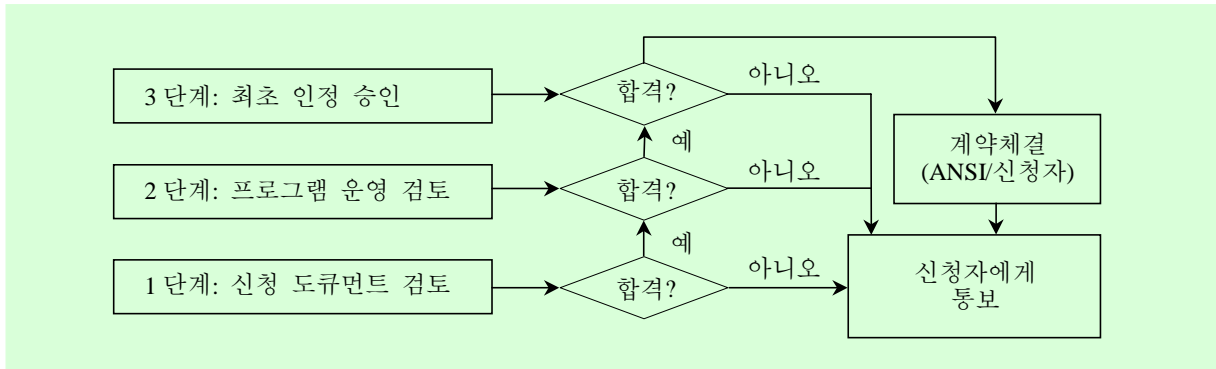
ANSI가 신청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인정하는 방법은 인증기관이 최초로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ANSI가 규정하는 인정 기준에 합격한 경우에 받는 최초 인정(Initial Accreditation)과 인증기관이 ANSI로부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최초 인정을 받은 후 일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최초의 인증 프로그램 내용이 제대로 만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시 인정해주는 연속 인정(Compliance Accreditation) 등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

다[5, 6].

가. 최초 인정

ANSI가 신청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부여하는 최초 인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 i) 1단계는 신청 서류에 대한 승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증기관이 신청한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한 표준 및 첨부된 서류들이 ANSI의 기준 등 요구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되며, 검토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 ii) 2단계는 신청자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ANSI가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위한 사무실과 각종 설비 등을 검사하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에 대해 확인한다. 궁극적으로 이 단계는 인증 프로그램이 1단계에서의 신청 서류와 부합되게 운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iii) 3단계는 최초 인정의 승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ANSI의 '인정위원회'가 2단계에서 취해진 인증기관의 현장 검사활동과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그림 2)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 인정방법

에 AN SI의 적합성평가 부서에 ‘최초 인정’을 권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ANSI의 적합성평가 부서에서 이 사실을 승인하게 되면 인증기관(신청자)과 ANSI는 계약서에 상호 서명⁵⁾을 함으로써 인증 프로그램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 인정방법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나. 연속 인정

ANSI가 최초로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하는 이 연속 인정활동은 ANSI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인정위원회’의 감독하에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진다.

ANSI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규정하

5) ANSI와 인증기관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최초 인정을 위한 당사자간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에는 쌍방간에 몇 가지 법적 의무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가됨. 법적 의무사항은 ANSI에 의해 취해지는 각종 요구사항, 인증기관에 의해 취해지는 각종 요구사항, ANSI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관련 각종 사항, 인증기관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ANSI에 아무런 위해(harm)를 끼치지 않는다는 각서, 인증 프로그램이 인정 신청시 구비된 서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임.

는 연속 인정활동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증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는데 있어서 ANSI의 인정 기준 및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해 확인을 하고, ANSI에 의해 승인 받은 각종 신청 서류면트상에 기재된 대로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속 인정활동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 i) 프로그램의 행정적 기능에 대한 감사
- ii) 인증제도 및 소요 인력의 운영이 ANSI에 의해 승인된 각종 서류면트와 적절히 부합하여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타당성 기능 감사
- iii) 인증기관 현장에서의 인증프로그램 운영감사
- iv) 기타 인증 프로그램이 ANSI의 인정 기준 및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는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감사 및 방문 활동

이와 같이 ANSI는 인증기관의 연속 인정활동

을 한 후 그 결과보고서⁶⁾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아울러 인정위원회에게도 연속 인정활동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ANSI의 인정위원회 보고서에는 인증기관의 인정 활동 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이 어떠한 계획으로 정정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ANSI는 인정위원회의 연속 인정활동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을 종합하여 그 사안에 따라 최초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 인정, 일시 정지 또는 취소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4. 비용 체계

ANSI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활동을 위한 비용 기준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규정되고 있다.

가. 신청 전 현장방문 및 협의 관련 비용

이 비용은 인증기관(신청자)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에 관련 서류 등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를 ANSI의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를 현장으로 직접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 1인을 기준하여 하루 \$1,200이 지불되며 여비는 별도로 책정된다.

나. 최초 인정 비용

이 비용은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이 포함된 인정 신청 서류가 ANSI(적

합성평가 부서)에 의해 검토된 후 신청된 인증 프로그램을 최초로 인정할 때 인증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여 실제 인정이 되었을 때 ANSI와 인정 신청자간의 계약에 의해 지불되며, 전문가 1인을 기준하여 하루에 \$1,200이며 여비는 별도로 책정된다.

비용 지급방법은 일반적으로 3단계 즉, 총 비용의 1/3은 계약서 작성시, 1/3은 인정 신청서 도큐먼트 승인 시기에, 1/3은 모든 인정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불한다. 그러나, 인정 평가 중간에 보충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자에 의한 결함 처리 완료시까지 앞에서 언급한 1일 기준 비용으로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계산된다.

다. 연속 인정비용

이 비용은 최초 인증 프로그램이 인정된 후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세부적으로 이 비용은 인정된 인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감사와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 1인을 기준하여 하루에 \$1,200(여비 별도)을 지급하고, 또한 ANSI가 인정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총 지출 비용을 각 인정된 인증 프로그램의 총 수익에 공평한 비율로 할당함으로써, ANSI의 인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충당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ANSI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활동 과정에서 인증기관(신청자)으로부터 각종 비용을 받을 때에는 비용 접수 5일 이내에 영수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등 투명한 비용 체계로 운영된다.

6) 인증기관의 연속 인정활동 평가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인증기관은 평가 후 30일 이내로 보완하여 ANSI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함.

5. 이의제기 절차

ANSI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 신청자인 인증 기관에는 ANSI의 인정활동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분쟁이 다소 야기될 수가 있다.

따라서, ANSI는 분쟁에 대한 양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에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ANSI와 인증기관간의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ANSI의 관련 부서는 먼저 분쟁의 요인 등을 파악하여 당사자와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ANSI의 관련 부서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ANSI 또는 인증기관 누구라도 중립적인 위치의 인정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ANSI 또는 인증기관에 의한 이의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 i) 제1단계: 이 단계는 ANSI 또는 인증기관에 의한 이의제기 신청서가 인정위원회에 접수되면, 인정위원회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와 분쟁에 대한 이해 관계가 없는 총 5명의 관계자로 선출 운영되는 패널(Panel)을 구성한다. 이때, 패널은 5명의 관계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인정위원회 대신 이의제기 처리를 위해 활동한다.
- ii) 제2단계: 이 단계는 패널이 ANSI로 하여금 분쟁에 관련된 인증기관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여 공지하게 한다. 청문회 날짜 지정은 공문이 발송된 날로부터 10일 ~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분쟁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iii) 제3단계: 이 단계는 패널이 ANSI와 인증기관 등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청문회를 통해 각각의 진술서(Statement)를 받은 후, 패널 구성 관계자의 다수결로 이의 제기된 분쟁을 마무리한다. 분쟁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패널 의장이 인정위원회와 ANSI, 인증기관 등 각 이의 제기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iv) 제4단계: 이 단계는 분쟁에 해결을 위한 마지막 중재 단계로서, 당사자가 패널의 분쟁에 대한 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ANSI Appeals Board’⁷⁾에 항고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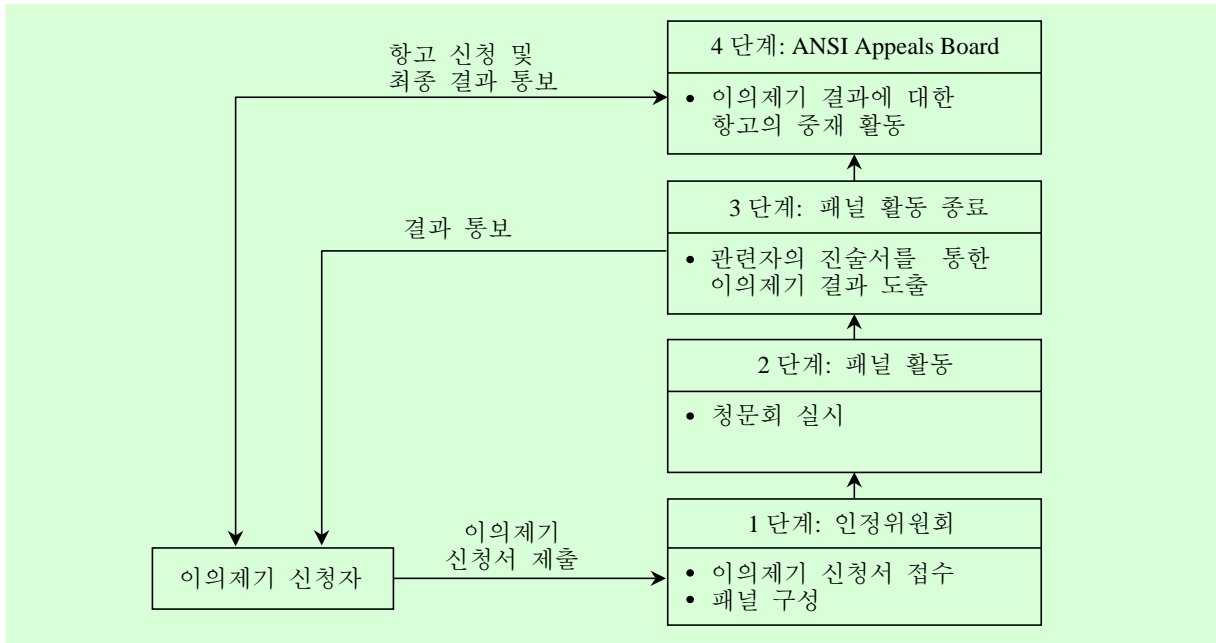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제기 신청하는 절차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6. 인정의 일시 정지 및 취소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관으로서 ANSI는 인증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최초의 인정 사실과 상이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즉, ANSI는 인증기관이 양자간에 체결된 각종 계약 사항을 위반(예, 각종 관련 비용 미 납입 등)하거나, 인증기관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ANSI에게 위해(harm)의 요인을 제공하거나, 인증기관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스

7)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이 기구는 미국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의해 선출된 3명의 중재자로 운영되며, 각 당사자들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3) 이의제기 처리절차

스로 포기 신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일시 정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III. 맺는말

미국의 ANSI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 및 품질 인증제도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통신시장의 단일화로 국가간의 무역 교류시 야기 될 수 있는 각종 절차나 제도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자국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평가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2].

즉, ANSI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운영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 활동을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 및 기준을 규정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 신청을 비롯하여 인정 절차, 각종 관련 비용 체계, 이의제기 등 각각의 인정 기준들에 대해 세세히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정책 및 기준의 규정을 통한 ANSI의 인정 활동이 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ANSI의 이러한 인정 활동은 국내적으로는 역량 있는 인증 프로그램(예: 적합성 평가)의 개발 운영을 촉진하고, 국외적으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의 환경을 제공(예: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ISO/IEC 등의 국제표준

을 사전에 준용)함으로써 범 세계적인 무역교류에 있어서 미국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제 무대에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환경을 조속히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약어]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CA: Conformity Assessment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참고 문헌

- [1]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st Century*,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5.
- [2] 세계 각국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한국표준협회, 1994. 9., pp. 81-85,
- [3] <http://web.ansi.org/public/ca.act.html>.
- [4] Jean-Philippe Favreau, *Industry/Government Open Systems Specification Testing Framework*, Version 1, NISTIR 5438, NIST, June 1994.
- [5] *ANSI Policy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ANSI, CA-1, Sept. 1992.
- [6] *ANSI Manual of Operations for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ANSI, CA-2, Sept. 1995.
- [7]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Program*, ANSI, CA-4, Sept. 1995.